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35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최기상 · 안도결 · 김기표
김재원 · 이정문 · 이주희
정일영 · 김영환 · 이성운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사람임.

그런데, 아동(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빈곤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거주)이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한편, 정부는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및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함.

이처럼 주거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년층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함. 참고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양육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가구(약 68,300가구)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약 2,4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 중 하나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거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관리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선유지비”를 “수선유지비, 관리비”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임차료”를 “임차료와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및 임차료”를 “범위, 임차료 및 관리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및 관리비”로 한다.

2. 해당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차임(借賃)을”을 “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각각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u>수선유지비</u> ,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u>수선유지비</u> , <u>관리비</u>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생 략) <u><신 설></u>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u>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u>임차료</u> 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 ----- ----- ----- ----- ----- <u>임차료와 관리비</u> -----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② -----
-범위, 임차료 및 관리비-----

-----.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
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
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조사) ①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주택등의 관리비에 관
한 사항

3. -----임차료 및 관리비-----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확인조사) ① -----

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② (생략)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생략)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
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
우

③ (생략)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
산화) ① ·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
리비에 관한 사항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임차료
또는 관리비-----

-----차임(借
賃)이나 관리비를-----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
산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4. (생략)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 ⑤ (생략)

③

1.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
비-----

2.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
비-----

3. 4. (현행과 같음)

5.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

④ · ⑤ (현행과 같음)